

제 2024-039 호

환경성적표지 인증서

- 저탄소제품 -

- 상호명 : 유진기업(주)
- 사업자등록번호 : 130-81-22624
- 소재지 : 경기도 부천시 석천로 457 (삼정동)
- 공장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에코중앙로 11 (고잔동) 외 11개 사업장
- 대표자성명 : 최종성
- 대상제품 : 레미콘 [25-27-180, 수도권]
- 제품명 :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25-27-180, 수도권]
- 인증기간 : 2024년 01월 31일 ~ 2027년 01월 30일
- 인증내용 : 저탄소제품 289kg CO₂ eq./m³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환경성적표지를 인증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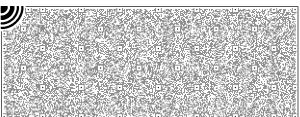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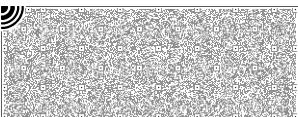
저 탄 소

2024년 01월 31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본



[별첨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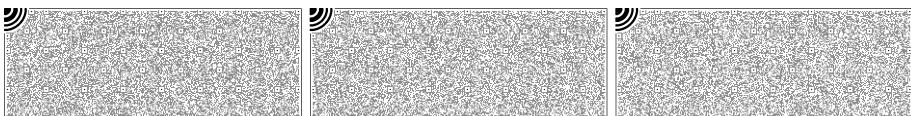
제 2024-039 호

○ 저탄소제품 인증제품 정보

환경영향별주	제조전단계	제조단계	사용단계	폐기단계	총 값
자원발자국 (kg Sb-eq./m ³)	8.173E-01	9.912E-03	-	-	8.272E-01
탄소발자국 (kg CO ₂ -eq./m ³)	2.874E+02	1.576E+00	-	-	2.889E+02
오존층영향 (kg CFC-11-eq./m ³)	3.075E-02	6.010E-08	-	-	3.075E-02
산성비 (kg SO ₂ -eq./m ³)	3.669E-01	3.449E-03	-	-	3.704E-01
부영양화 (kg PO ₄ ³⁻ -eq./m ³)	6.543E-02	5.375E-04	-	-	6.597E-02
광화학스모그 (kg C ₂ H ₆ -eq./m ³)	6.678E-02	1.428E-04	-	-	6.692E-02
물발자국 (m ³ H ₂ O-eq./m ³)	4.438E-01	9.107E-02	-	-	5.349E-01



본



[별첨2]

제 2024-039 호

○ 저탄소제품 인증제품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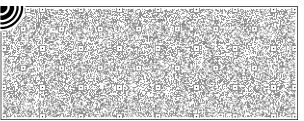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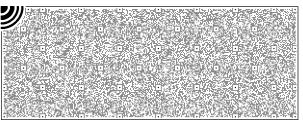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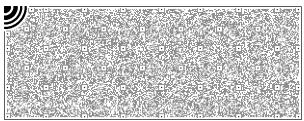
구분	기업명	공장소재지	제품명	비고
생산자	유진기업(주)	인천광역시 남동구 에코중앙로 11 (고잔동)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25-27-180, 수도권]	파생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반월천북길 188 (팔곡일동)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 493번길 35 (대자동)		
		인천광역시 동구 방축로 62번길 37 (송림동)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진관산단로 59번길 21		
		경기도 부천시 석천로 457 (삼정동)		
		경기도 부천시 오정로 189 (내동)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서봉로 720		
		인천광역시 서구 약암로 1 (오류동)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포은대로 890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현로 91-44 (문형동)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청원로 1752-55		

타소 289kg

환경부

저 탄 소

본



환경성적표지 인증 약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과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은 자(이하 “인증기업”이라 한다)는 다음 각 조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환경성적표지는 국제표준 ISO 14025(Environmental labels and declarations-Type III environmental declarations-Principles and procedures)에 근거하여 한국정부(환경부)에서 공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환경성선행 제도이다. 환경성적표지는 제품 및 서비스의 원료제취, 생산, 수송·유통, 사용, 폐기 등의 모든 과정에 대한 환경영향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 대중에게 제품에 부착하는 제도이다. 환경성적표지 제도는 탄소발자국(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 물발자국(수질 및 수자원에 미치는 영향), 자원발자국(폐기물발생 및 자원순환에 미치는 영향), 오존층영향(대기질에 미치는 영향), 산성비(토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부영양화(수질 및 수자원에 미치는 영향), 광화학 스모그(대기질에 미치는 영향) 7가지의 영향별로 환경성적표지를 포함하며, 탄소발자국은 저탄소제품을 포함한다.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인증기업”과 “인증기관”的 환경성적표지 인증에 관한 기본적인 권리 및 의무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약관은 해당 인증 기관에 기재된 인증내역에 대해서 적용한다.

제3조(준수사항) “인증기업”은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인증제도와 관련된 법규를 형상 준수하여야 한다.
2. 작성지침 및 “저탄소제품 기준” 고시에 부합되도록 제품을 생산하여야 한다.
3. 인증제품의 생산 및 판매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4. 환경성적표지 도안은 환경성적표지 적용기준을 명확히 표기해서 부착하여야 한다.
5. 인증제도와 관련하여 “인증기관”에서 직접 실시하는 정기 및 특별 사후관리 심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6. 다음과 같은 인증 관련 변경사항을 지체없이 “인증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가. 대표자 변경, 상호 변경, 제조공장의 이전 또는 변경, 인증동록 조직의 부도, 양도, 양수 또는 합병, 생산의 중단 및 폐업
나. 생산공정, 설비, 공법의 변경
7. “인증기업”은 인증이 종료되거나 취소된 경우 인증 획득사실과 관련된 모든 광고물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제4조(환경성적표지 사용 권한 및 사용 시 의무사항) “인증기업”은 인증제품에 대하여 인증기간 동안 환경성적표지 도안 사용에 대한 권리와 함께 환경성적표지 도안의 사용은 다음 각 항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환경성적표지 도안은 「환경성적표지 작성지침」(이하 “작성지침”이라 한다) 별표6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환경성적표지 인증 업무규정」(이하 “업무규정”이라 한다) 제32조(환경성적표지 표시방법 및 형태)에 준수하여야 한다.

② “인증기업”은 제1항과 관련하여 환경성적표지 도안을 표시하거나 환경성적표지에 관한 광고를 할 경우 인증제품 및 설명서, 제품의 포장·용기·홍보물·각종 서식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인증제품이 아닌 품목과 함께 선전하는 경우에는 인증제품이 아닌 품목이 인증제품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5조(비밀유지) “인증기업”과 “인증기관”은 업무상 취득한 상호간의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는다. 이 의무는 인증이 종료된 후에도 유효하지만, 합법적으로 일반화된 정보 또는 업무상 무관하게 합법적으로 취득한 정보는 본 조항의 저촉을 받지 않는다.

제6조(인증의 범위) “인증기관”이 “인증기업”에게 부여하는 인증은 “인증기업”의 해당 인증서 상에 기재된 제품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인증기업”이 생산하는 제품 전부를 승인·인증하는 것은 아니다.

제7조(인증제품 제출) “인증기업”은 인증을 받은 후 환경성적표지 표시사항과 동일하게 환경성적표지 도안이 표시된 인증제품 제출에 대한 “인증기관”的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인증기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품 특성, 가격 등을 고려할 때 건전제품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환경성적표지가 표시된 제품 설명서 제출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8조(관련 지침의 변경) “인증기관”은 해당 제품의 작성지침 또는 「저탄소제품 기준」 고시에 제개정되었을 경우, “인증기업”에게 제개정된 작성지침 또는 「저탄소제품 기준」 고시를 통보해야 한다.

제9조(경신인증) “인증기업”은 환경성적표지 인증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인증기간 만료일 90일 전부터 경신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제10조(인증내역 변경) “인증기업”은 인증서에 명시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인증기관”에게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또는 교체로 신청을 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인증기업”에 있다.

제11조(시정권고 및 인증취소)

- ① “인증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인증기관”은 “인증기업”에게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1. 환경성적표지 인증서의 내용과 달리 사용한 경우
 2. 환경성적표지 도안을 작성지침 별표 6과 다르게 사용한 경우
 3. 제3조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과장광고(대리점 및 위탁판매 등 유통업체 포함)로 소비자의 판단을 흐리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인증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 ② “인증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인증기관”은 “인증기업”的 해당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취득한 경우
 2. 인증의 내용과 다른 제품에 환경성적표지를 표시하여 유통시키는 경우
 3. 인증을 받은 제품을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유통시키지 않은 경우
 4. 관계법령 및 고시 등에 별도로 저분이 규정된 사항은 해당 저분기준에 따른다.

제12조(관련입주) ① “인증기업”은 인증제품에 대한 인증기간 만료로 인증이 종료되거나 제11조제2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소비자가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여타의 표시 및 광고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인증기업”은 제1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인증기관”이나 소비자에게 손해를 기쳤을 경우에는 법에 따른 보상 등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13조(보상책임) 인증제품과 관련하여 소비자와 “인증기업” 사이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인증기업”에게 있다.

제14조(권리·양도 등 금지) “인증기업”은 인증서에 정한 환경성적표지 사용권한을 제3자에게 양도·전매 또는 대리사용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15조(이해조정) 이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증기업”과 “인증기관”간 상호 협의 및 업무규정에 따라 결정되며 쌍방의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인증기관”的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본

